

#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.  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」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만료일이 도래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제2항제6호)

-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

나. 일반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(안 제7조제3항)

- 기금 관련 통합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의 통합기금 운용심의 대행 근거 삭제

다.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(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)

라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8조~제9조)

마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12조제1항)

바. 용어,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3조~제5조, 제7조, 제11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적립하여야한다”를 “적립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다만”을 “다만,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지역경제”를 “지역 경제”로, “대규모사업”을 “대규모 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”를 “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60%”를 “6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3항 제4호”를 “제3항제4호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기금의 관리·운용)”을 “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을 “통합기금”으로, “기금운용계획”을 “통합기금운용계획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기금의 운용심의)”를 “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금”을 “통합기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기금”을 “통합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금운용계획”을 “통합기금운용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금운용”을 “통합

기금운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기금”을 “통합기금”으로, “심의위원회의”를 “심의위원회 회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6.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
2.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

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

명 또는 위촉하되,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.

1. 개별 기금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실·국·소장

2.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심의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

제11조(중전의 제9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을 “통합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”을 “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”으로, “비치하고, 기금”을 “갖추어 두고, 통합기금”으로 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관 :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
2. 통합기금출납원 :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

제12조(중전의 제10조)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”을 “통합기금”으로 한다.

- 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3항,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

용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, 대규모사업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3. (생략)
4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  -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6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3항 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 
지역 경제 -----  
대규모 사업 -----  
-----
3. (현행과 같음)
4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----  
-----  
④ -----  
-----  
----- 60퍼센트-----  
----- . ---- 제3항제4호  
-----  
-----.

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--  
통합기금-----  
-----  
통합기금운용계획-----  
-----.

제7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통  
합기금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3. (생략)
4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5. (생략)

<신설>

6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「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」에 따른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.

<신설>

-----.

② -----  
-----.

1. 통합기금-----  
-----
2. 통합기금운용계획-----  
-----
3. (현행과 같음)
4. 통합기금운용-----  
--
5. (현행과 같음)

6.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7. 통합기금-----  
----- 심의  
위원회 회의-----

<삭제>

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

<신 설>

<신 설>

간, 이자율, 예상 이자액 등)을  
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 
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  
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 
한다.

1.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  
적

2.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·의  
결 내용
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  
사항 등

제8조(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

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 
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 
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  
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 
실국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
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
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전  
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 
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.

1. 개별 기금 업무를 수행하는  
담당 실·국·소장

2.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심의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

<신 설>

제8조 (생략)

제9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예산재정과장

2. 기금출납원 : 예산담당주사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

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

제10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통합기금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통합기금운용관 :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

2. 통합기금출납원 :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

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

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존속기한) ①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사전에 구미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1조 (생략)

출납원은 통합기금-----  
----- 갖추어 두고,  
통합기금-----  
-----.

제12조(존속기한) 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----- 통합  
기금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3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

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소 관 부 서		예산재정과
입 안 자	과 장	조 민 규
	팀 장	김 원 대
	담 당 자	김 수 현 (480-2534)